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수배출시설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1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수배출시설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	2
※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2025년 3월 7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폐수배출시설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근거를 신설하여,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제재처분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2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8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u>안</u> <u>니</u> 한 자	3. ----- ----- <u>아</u> <u>니</u> 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
3의2. ~ 6. (생략)	3의2. ~ 6.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3조¹⁾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75조제1호²⁾에 따르면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 제재처분의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행정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입법례로서,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규정한 법령이 다수 존재하므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의 합리성·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거짓변경신고의 과태료 부과 입법사례]

법령	과태료 부과	과태료 (백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1호)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제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1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수집한 자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6호)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지하수법 (제40조제1호)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37조제2항제2호)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10

한편, 100만원의 과태료 수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물환경과 관련된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 허가 및 신고 대상

허 가(영 제31조제1항)	신 고(영 제31조제2항)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1.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변경허가(영 제31조제3항)	변경신고(규칙 제38조)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변경신고〉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후 변경신고〉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